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국내 상품화 여부
기술 검토 확인 요령 공고 안내**

통상산업부 고시제1995-18호에 의거 한국 전자공업진흥회의 고도 기술 소프트웨어 국내 상품화 여부 기술검토 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2. 18.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회장

제1조(목적)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국내 상품화 여부 기술검토 요령(이하 '요령'이라 함)은 고도 기술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8호(이하 '고시'라 함)에 의거, 관세감면을 받고자 할 때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동일 기능의 국내상품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요령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3항 및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국내 상품여부 기술 검토를 받고자 하는 수입 소프트웨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3조(국내상품)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상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 중에 수입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제품이 있는 경우
2. 정부출연 자금(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 기반기술사업 등)으로 상품(제품)화된 소프트웨어 중 수입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제품이 있는 경우
3. 기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하여 상품화가 되었다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이하 '본회'라 함) 회장이 인정하

는 소프트웨어 중에 수입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경우

제4조(국내상품화 관련여부 기술검토 신청) 요령 제2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상품화 여부 기술 검토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회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국내 상품화 여부 기술검토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2. 카달로그 1부.
3. 수입 소프트웨어 기능 설명서 (다수의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모듈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구성도를 첨부) 1부.
4. 수입승인 (신청서 (I/L) 1부.
5. 기타 본회 회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 서류

제5조(검토 및 처리) ① 요령 제 4조에 의거 본회에 기술검토가 신청되면 국내 상품화 관련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국내 상품화 여부 기술 검토서 1부를 발급한다.

② 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검토서의 처리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본회 회장이 인정하는 본회의 휴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국내 상품화 여부 기술검토 및 확인의 정확성을 위하여 본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본회 회장 위촉과 각 위원 동의에 의하여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가 자체적으로 국내상품화 여부 기술검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수입 소프트웨어

의 검토

제7조(수수료 징수 및 관리) ① 본회 회장은 고시 제8조(수수료 징수)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 징수 및 관리는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제8조(검토서의 유효기간) 본회 회장이 발급한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국내 상품화 여부 기술검토서의 유효기간은 검토일로부터 30일까지 한다.

제9조(검토 실적보고) 본회 회장은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국내 상품화 여부 기술검토 실적을 매 분기별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요령은 199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

1. 수수료 징수기준

① 소프트웨어의 도입(수입) 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인 경우 : 3,000원/건

② 소프트웨어의 도입(수입)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의 경우 : 0.3원/달러(US\$)

2. 징수된 수수료의 사용

징수한 수수료는 국산화 제품 여부 검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건비, 자료구입비, 교통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함

3. 징수된 수수료의 관리

수수료 징수 수입과 지출은 본회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리하고 매년 1월말 까지 전년도 실적을 통상산업부에 보고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용안내

종래의 심판·재판을 통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은 과다비용, 장기간 소요, 기업비밀 공개 등의 문제점이 많아 우리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은 금년 1월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기구명칭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2. 조정신청대상

-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3. 조정신청방법 : 소정의 조정신청서 서식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신청비용 : 무료)

4.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됨

5. 동위원회를 이용시 이점

조정위원들이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분쟁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조정위원은 산업계 및 학계인사, 판·검사, 변호가, 변리사, 특허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

조정이 잘 되었을 경우 수년(2~4년)이 걸릴 분쟁이 단기간(2~3개월)내에 해결된다.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신청 비용이 무료이므로 분쟁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대리인, 감정인 등의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함)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다.

조정과정에서 쌍방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 진흥회 게시판 *****

Cross-License 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분쟁당사자간에 악감정을 남기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보게되므로 기업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6.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Tel : 02)561-9404

공동 정보화 자금지원 사업 안내

1. 공동 정보화 사업

가. 지원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아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시 자금지원

- ①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사업
- ② 응용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 사업
- ③ 데이터 베이스의 공동개발 활용 사업
- ④ 자동화 설비의 공동활용 사업
- ⑤ 기타 공동으로 정보화 계획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

나. 지원범위

공동정보화 추진에 소요되는 컴퓨터 시스템과 이와 연결되는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 구입비, S/W구입비, 외주개발비, 생산자동화용 부품 및 설비구입비, 기타 부대설비 설치비 등 시설 및 운전자금

다. 지원조건

용도	금리	대출기간	지원한도 및 비율
시설자금	연 8.0%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5억원 이하
운전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2. 정보화 우수업체 지정사업

가. 지원대상

다른 업체의 정보화 모델이 될 수 있는 업체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요원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

○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사례업체 우선

○ 지역특화 업종 영위업체 지정

나. 지원범위

정보화 우수업체 지정·육성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과 이와 연결되는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구입비, S/W구입비, 외주개발비, 컴퓨터 지원 생산, 검사, 설계, 물류설비 등 시설 및 운전자금

다. 지원조건

용도	금리	대출기간	지원한도 및 비율
시설자금	연 8.0%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이내로서 5억원 이하 (운전자금은 2억원이하)
운전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3. 범용 S/W 개발사업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유통시키고자 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범위

범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 주변기기, 기계장치 및 기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기술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용역비, 하드웨어 이용료 등 시설 및 운전자금

다. 지원조건

용도	금리	대출기간	지원한도 및 비율
시설자금	연 7.5%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서 3억원 이하
운전자금			

4. DB/Network 구축사업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데이터 베이스(DB)화 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

나. 지원범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

진흥회 게시판

를 마련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3. 후원 : 특허청
4. 전시기간 : 1995. 9. 1~9. 4(4일간)
5. 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 페사디나 컨벤션 센터 (The Pasadena Convention Center, California)
6. 출품대상 :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7. 출품방법 : 본인참가 전시(단, 위탁출품전시자는 위탁비용 부담)
8. 출품범위 : 발명(고안), 신기술로서 그 제품이나 사진, 도면 (특히나 실용실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된 것에 한함)
9. 소요경비 : 출품선정자 회의시 내역 확정 - 부스사용료
 일반부스 (3m×3m) : \$1,350~\$1,750
 소형부스 (1.5m×1.5m) : \$675~\$875
 - 출품참가 여비 및 체재비 : 출품자 부담
10. 신청접수
 - 접수마감 : 1995. 2. 17 (금) 까지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 (우)135-7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KOEX 별관2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지원부 (☎ 551-5571/2)

'95년도 품질대학 순회교육 일정 안내

1995년도 주요공단별 품질대학 순회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공단지역내 업체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이 공단별 순회교육에 참여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자 및 장소

공 단 별	소재지	일자	장 소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경남창원	3. 16	공단6층상황실
중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경부 구미	3. 23	공단2층 강당

나. 교육시간 : 14 : 00~18 : 00

다. 참석대상 : 관내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라. 문의처 : 공진청(Tel : 503-7923)

남아공 투자조사단 참가 안내

1. 남아공의 투자환경 : 풍부한 자원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산업구조를 갖추고 우수한 인프라스트럭처와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

구 분	내 용
주요수출품	금, 기초금속, 광물류 등
주요수입품	기계장비, 운수장비, 화학제품 등
주요자원	금, 크롬, 알미늄, 백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석탄, 철광석 등
투자유망분야	전기, 전자, 식품, 금속, 의약, 플라스틱, 가죽세공, 의류, 제지, 폴리머, 건축자재, 체육시설, 관광업
투자이점	이중통화환율, 인센티브제도, 세제혜택, 외국인 토지소유 및 송금 자유

2. 파견개요

파견국가	파견기간	파견주요국가	현지방문대상	파견대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95. 3. 18~4. 1	요하네스버그 이스턴던더 반 케이프타운	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 투자관련기관,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향만시설, 주요기업 등	국내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급 20명 내외

3. 예상일정 및 주요 활동

- '95. 3. 18 (토) : 출발
- 3. 19(일)~3. 21(화) : 요하네스버그의 소재 무역 및 산업과 투자개발 관련기관 상공회의소, 산업공단, 한국대사관 등과 투자관련 면담과 간담회
- 3. 22(수)~3. 25(금) : 더반 소재 투자기관, 시의회와 상공회의소, 한국업체, 금융기관 등과 투자관련 면담 및 간담회

***** 진흥회 게시판 *****

- 3. 26(일)~3. 28(화) : 이스트런던 소재 산업공단과 주요 생산업체, 항만 당국, 시의회와 상공회의 등과 투자관련 면담 및 간담회
- 3. 29(수)~3. 31(금) : 케이프타운에서의 투자관련 기관과 협회, 시의회와 상공회의소, 산업공단 등과 투자관련 면담과 간담회
- 4. 1(토) : 도착
- 4. 참가업체 부담 : 왕복항공료, 숙박비, 현지 교통비, 공통경비 등 개별부담
- 5. 수요경비 추정

구분	금액	비고
항공료	US\$1,660	왕복으로 VAT 포함함.
숙박료	US\$1,667.5	식비 및 현지교통비 포함, 1인 1실 기준
공통경비	₩100,000(\$125)	공동선물비, 조사단 Brochure 제작비 등 (추후정산)
계	₩2,762,000	\$1=₩800 기준

- 6. 현지 업무지원사항
 - 투자유치 관련기관이나 협회 등의 방문 및 개별미팅에 대한 일정 마련
 - 현지 한국업체와 주요기업체 방문 및 공단 지역 방문
 - 지방정부와 상공회의소 등의 접견과 리셉션
- 7. 참가신청 및 신청금 납부방법
 - 신청방법 : 별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95.3 4(토)까지 Fax 송부신청
 - 신청금 : '95. 3. 14(토) 한 ₩300,000을 아래 계좌로 무통장입금
 - * 통장개설은행 : 국민은행 여의도중앙지점
 - * 계좌번호 : 090-01-0264-676
 - * 예금주 : 이인주
- 8.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화사업부,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CFIS)
TEL : 769-6852~7, 9

1995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안내

- 가. 지역별 품질경영대회
 - 행사주관
 - 주최 : 14개 시·도
 - 주관 : 한국표준협회
 - 후원 : 공업진흥청
 - 개최시기 : 행사 주최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일정은 사전 협의
 - 개최분야 : 분임조 개선사례분야(현장, 설비, 사무·서비스 및 건설부문)
 - 개최부문 : 각 분야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
 - 참가대상 : 한국표준협회에 등록된 관할지역 내 품질분임조
 - 행사내용 : 행사규모의 확대 및 내용의 다양화로 지방 품질경영대회의 활성화 추진
 -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 품질경영 특강
 - 품질명장, 우수제안자 사례 발표
 - KS 및 각종교육, 진단지도 상담 코너운영 등
 - 참가신청
 - 신청접수 : 시·도별 품질경영 추진본부
 - 신청서류(별첨참조)
 - 참가신청서 1부,
 - 발표원고 1부
 - 포상
 - 최우수상, 우수상 : 전국대회 참가자격 부여
 - 장려상 : 최우수상, 우수상을 제외한 발표 분임조
- * 산업별 협회 및 조합은 「지역별 품질경영대회」에 준함
- 나. 분임조 운영사례 경진대회
 - 주최 : 한국표준협회
 - 개최시기 : 4~5월 중
 - 개최부문 :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구분
 - 참가대상
 - 특정주제 해결사례가 아닌 최근 3년 간의

해당 분임조 활동 전반에 걸친 운영 사례로서 회사내에서 분임조활동이 자주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타 분임조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 분임조

- 지속적인 분임조 활동을 통하여 품질개선, 5요소(5S), 안전성 향상, 인간관계 개선, 사기양양 등 특정주제에 구애됨이 없이 창의와 명량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임조

○ 참가신청

- 신청접수 : 한국표준협회
- 신청서류(별첨참조)
- 참가신청 1부
- 발표원고 1부

○ 포상

- 최우수상, 우수상 : 전국대회 참가자격 부여
- 장려상 : 최우수상, 우수상을 제외한 발표 분임조

다. 연구팀 개선사례 경진대회

○ 주최 : 한국표준협회

○ 개최시기 : 6~8월 중

○ 개최분야 (13부문) : 공정관리 1(기계금속), 공정관리 2(전기·전자), 공정관리 3(화학), 공정관리 4(섬유·기타), 방침관리, 품질검사 및 평가, 신뢰성·제품책임, 구매 및 물류관리, 분임조·제안운영, 개발·설계, IE, VE, PM

○ 개최부문 :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구분

○ 참가대상 : 중간관리층(기사 포함)의 연구팀

○ 참가신청

- 신청접수 : 한국표준협회
- 신청서류(별첨참조)
- 참가신청 1부
- 발표원고 1부

○ 포상

- 최우수상, 우수상 : 전국대회 참가자격 부여
 - 만점의 85%이상 득점한 우수 분임조
- 장려상 : 최우수상, 우수상을 제외한 발표 분임조

라.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 개최시기 : '95. 9. 18~9. 20(예정)

○ 개최분야 및 부문 :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구분

○ 참가대상

- 각 분야별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 분임조
- 대기업군(그룹별) 경진대회에서 우수 분임조(그룹별 1팀)

개최분야	개최부문
분임조 개선사례 분야	○ 현장부문
	- 대기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금속 • 전기·전자 • 화학 • 섬유·기타
	- 중소기업 부문
	○ 설비부문
	○ 사무·서비스부문
	○ 건설 부문
분임조 운영사례 분야	○ 대기업·중소기업부문
연구팀 개선사례 분야	○ 대기업·중소기업부문

○ 참가신청

- 신청접수 : 한국표준협회(QM추진부)
- 신청서류 : 각종 예선대회와 동일함

○ 우수분임조 포상

- 금상 (대통령상)
- 은상 (대통령상)
- 동상 (대통령상)